

# 예 산 총 칙

2020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7,687,694	17,330,631
일반회계	502,505,729	15,075,172
특별회계	75,181,965	2,255,459
공기업특별회계	35,110,900	1,053,32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110,900	1,053,327
기타특별회계	40,071,065	1,202,132
주택사업특별회계	12,200	366
의료보호특별회계	403,760	12,1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100,000	3,0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87,000	23,610
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54,730	28,642
수질개선특별회계	36,762,538	1,102,876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특별회계	1,050,837	31,525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조서] "별첨"과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조서] "해당없음"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825,47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7,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